

구미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9. 7. .
발 의 자	김낙관 의원 외 7명

구미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(김낙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9. 7. .

발 의 자 : 김낙관 · 강승수 · 김재우 · 김춘남
이선우 · 이지연 · 장미경 · 홍난이
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라. 웰다잉 문화 확산, 교육, 홍보 등 관련사업 추진 및 법인·단체에 대한 예산지원(안 제5조~제6조)

마.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(안 제7조)

바.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유출 금지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6. 26. ~ 7. 2.) 결과 의견없음

구미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웰다잉(Well-Dying) 문화”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.
2. “엔딩노트(Ending Note)”란 자신의 가족관계, 병력, 장례절차, 재산관계,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.
3.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,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수립 등)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

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
2.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·홍보
3.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4. 존엄한 죽음, 웰다잉 문화 등에 대한 인식조사
5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추진 등)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(이하 “노령자 등”이라 한다)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
2. 유언장,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3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
4.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·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
5.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
6.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
7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사업지원)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민간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정보 유출 금지)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및 기관·단체의 종사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·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시 사업의 계획에 따라 운영비 및 공익활동 사업비 발생이 예상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구미시장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· 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됨

4. 작성자

-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장 권준경(480-4021)